

#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안내

## I. 보증 개요

### ■ 추진경위

- 건설업체의 경영악화,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시행
- 이에 따라 조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시행

### ■ 보증 대상

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
  - 우리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종에 한해 발급
  - 수급인 및 하수급인, 법에 의한 재하도급 계약도 발급대상에 포함
  - 전기, 통신, 소방 공사 등 타 법령에 의한 공사는 보증대상에서 제외
- 최대 4개월치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장
- 보증대상 기계 :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7종

볼도저, 굴삭기, 로더, 지게차, 스캐리퍼, 덤프트럭, 기중기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벙칭플랜트, 콘크리트피니셔, 콘크리트살포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아스팔트믹싱플랜트, 아스팔트피니셔, 아스팔트살포기, 골재살포기, 쇄석기, 공기압축기, 천공기, 항타 및 항발기, 사리채취기, 준설선, 특수건설기계, 타워크레인

### ■ 보증 면제대상

-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
-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
- 1건 건설기계 대여계약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  - 동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
  - ※ 보증서 미제출시 행정처분 :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,000만원

## II. 보증 신청

### ■ 보증신청

- 계약 체결
  -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



- 제출서류
  -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신청서
  - 당해 공사계약서 사본
  -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조건 등에 대한 서류사본
  - 건설기계 대여계약 관련자 현황
  -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사본
  - 납세증명서
  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
### Ⅲ. 기타사항

- 도급금액 산출내역 명시
  -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
  -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을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
- 용자한도와 연계
  - 용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은 일부 용자금 상환 후 보증서 발급(지급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)

##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

Q

A

- Q** 기계대여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지?
- A** 건설기계 사용요청 시 대여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가 없는 대여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- Q** 일대 계약시 대여횟수 미정의 이유로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?
- A** 건산법의 보증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해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주 00회, 월 00회 또는 사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보증서 발급 후 대여횟수 및 금액이 증가된 경우 증액된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Q** 일대 계약인 경우도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?
- A** 일대 계약도 보증서 발급 대상입니다. 단, 당일 사용, 당일 대금결제인 경우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안내

- Q**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이 보증 대상인지?

**A**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, 1건 계약금액(부가세포함)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,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Q** 보증서 면제대상의 공사도중 대여금액 증액 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?

**A**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증액되는 시점에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.
- Q**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 보증 면제대상인지?


**A** 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이 아닙니다.
- Q** 보증서 미제출 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?

**A** 영업정지처분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).
- Q** 포괄대금지급보증,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?

**A** 포괄대금지급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 참고로 건산법 제6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Q**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?

**A**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(27종)를 말하며, 유사장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(예 : 화물차).  
※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
- Q** 보증이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?

**A**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 단,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(연명등록자)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러한 경우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'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'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'상호 및 주소'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 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등록자로 볼 수 있습니다.
- Q**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는?

- A** 건설공사의 (하)도급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(하)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Q** 건설기계가 (가)압류 상태인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?
- A** 기계 대여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, 압류 관련으로 기계사용의 문제 발생 시 채권자(기계대여업자)의 귀책사유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

**<참고> 건설기계의 범위 (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)**

건설기계명	범 위
1. 불도저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
2. 굴삭기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
3. 로더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
4. 지게차	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. 다만,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.
5. 스크레이퍼	흙·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6. 덤트럭	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. 다만,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
7. 기중기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. 다만, 궤도(레일)식인 것을 제외한다.
8. 모터그레이더	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9. 롤러	1.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. 피견인 진동식인 것
10. 노상안정기	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11. 콘크리트베탈플랜트	골재저장통·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
12. 콘크리트피니셔	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13. 콘크리트살포기	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14. 콘크리트믹서트럭	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(재료의 투입·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)
15. 콘크리트펌프	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
16. 아스팔트믹싱플랜트	골재공급장치·건조가열장치·혼합장치·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
17. 아스팔트피니셔	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18. 아스팔트살포기	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19. 골재살포기	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20. 쇄석기	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
21. 공기압축기	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.83세제곱미터(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) 이상의 이동식인 것
22. 천공기	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23. 향타 및 향발기	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.5톤 이상인 것
24. 사리채취기	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25. 준설선	펌프식·바켓식·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. 다만,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
26. 특수건설기계	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
27. 타워크레인	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,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. 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.